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396호, 2023.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국방부장관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헬리콥터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업무 등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기기인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를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다.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25호의2 신설)

라.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통제구역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마. 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통제구역에서의 비행허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항공교통업무 및 안전관련 지시,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안 제26조제3항 신설)

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접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위탁(안 제26조제8항제1호의2 신설)

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계기비행절차 설정·공고,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안 제26조제1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기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

제26조제1항에 제20호의2 및 제2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6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사용사업 헬리콥터

다. 국외운항헬리콥터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제26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의3.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다른 통제구역에서의 비행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항공로는 제외한다)

3.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에서의 비행 허가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5.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6.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제26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제26조제10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7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0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

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등은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8항 중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을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각각 신설한다.

1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

3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 중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를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이”로,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하영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로 하고 다음 호를 신설한다.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항공기의 범위)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기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20. (생략) <u><신설></u>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 1. ~ 20. (현행과 같음) 20의2. 법 제6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21. ~ 25. (생략) <u><신설></u>	<u>헬리콥터</u> <u>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사업용 헬리콥터</u> <u>다. 국외운항헬리콥터</u> 2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 서만 해당한다)
26. ~ 60.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u><신설></u>	26. ~ 60.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u><신설></u>	3의3.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따른 통제구역에서의 비행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 서만 해당한다)
4. ~ 12. (생략) <u><신설></u>	4. ~ 12.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u>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에게 위탁한다.</u> 1. <u>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u> 2. <u>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 비행절차의 설정·공고(항공로는 제외한다.)</u> 3. <u>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 구역에서의 비행 허가</u> 4. <u>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u> 5. <u>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u> 6. <u>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u> 7. <u>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학회에 위탁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⑧·⑨ (생략)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u> 2.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	--

1. ~ 6. (생략)

<신설>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항
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
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에게 위
탁한다.

1.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
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
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계기
비행절차의 설정·공고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
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
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
인에 관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락처	(044) 201 - 4255